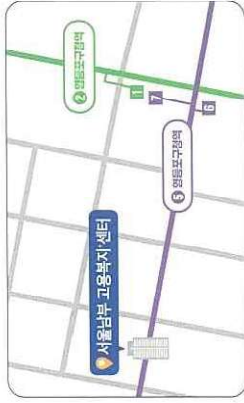


신청문의



1유형(구직자)

- 부서** ☎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팀
- 전화** ☎ 02-2639-2398, 2472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3층)



* 2호선 영등포구청역 1번출구, 5호선 영등포구청역 6,7번 출구 / (구)목화예식장 방향 도보7분

2유형(기업)

- 부서** ☎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전화** ☎ 02-2639-2413, 2456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9층



*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도보8분



2026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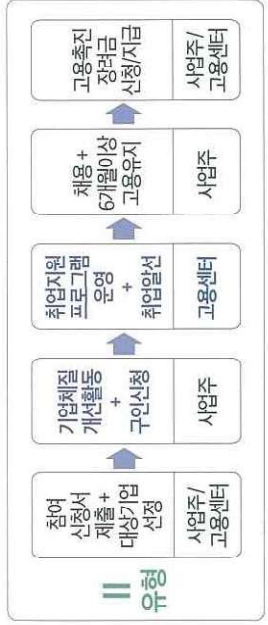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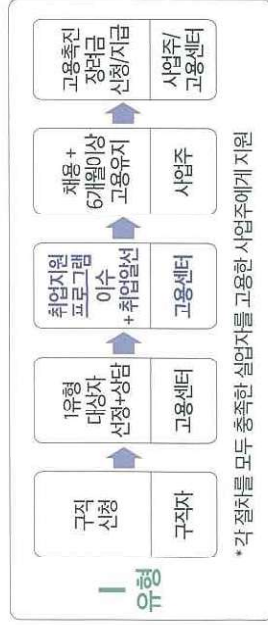
사업개요

지역별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센터 취업알선 및 고용 사업주 지원

구분	서비스 대상	지원 내용
I 유형	● 북한민	●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알선
	● 청년(만34세 이하) (실업기간 3개월이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40세~58세 이하) (실업기간 3개월이상)	
II 유형	● 제조업 ● 보건업(병·의원) ● 항공운송관련업(지상조업, 기타 운송지원 등)	● 기업 컨설팅(체질개선) ● 채용지원서비스 (구직자 알선)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대량고용변동발생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의 이직자 필수 지원(I유형)

지원절차



지원 내용

I 유형

지원대상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에 본사가 소재한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구인, 구직 신청 필수)

II 유형

지원대상

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에 본사가 소재한 제조업, 보건업, 항공운송관련업 해당 기업

지원요건

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참여 후 체질 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구인·구직 신청 필수)

지원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연간 최대지원금액	6개월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형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신제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 「근거규정」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5호 '25.11.시행)